

파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시 보

제2526호

2026년 6월 5일 (화)

차 례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6-1646호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 파주시 공고 제2026-1647호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 파주시 공고 제2026-1704호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 파주시 중앙도서관 공고 제2026-6호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 파주시 중앙도서관 공고 제2026-7호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
- 파주시 중앙도서관 공고 제2026-9호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

고시 · 공고

- 파주시 고시 제2026-22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8
- 파주시 공고 제2026-1672호 소하천점용허가 공고 9
- 파주시 공고 제2026-1676호 부의안전공고 10
- 파주시 공고 제2026-1685호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1차) 공시송달 공고... 11
- 파주시 공고 제2026-1693호 대남 소음방송 피해 지원금 신청 공고 19

회 람									
--------	--	--	--	--	--	--	--	--	--

발 행 : 파 주 시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5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2. 개정이유

-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명칭 및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 파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종전의 규칙을 전부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 변경

- (현행)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 (변경) 파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나. 규칙의 목적 및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안 제7조)

라.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마. 통합사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바. 회의록 작성, 비밀준수, 출석발언,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안 제13조)

사.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6월 25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청년청소년과 청소년안전망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우 10932)

○ 전화 : 031-940-4494 / FAX 031-940-8659(전송시 전화 확인 필요) / 이메일 jins1066@korea.kr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5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파주시청소년수련관 명칭을 「문산청소년센터」로 변경하여 지역주민과 청소년의 인지도를 높이고, 접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파주시청소년수련관 명칭을 「문산청소년센터」로 변경 (안 별표 1, 별표 2)
- 청소년시설(활동시설) 종류 및 기능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변경 (안 별표 1)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6월 25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청년청소년과)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우 10932)

○ 전화 : 031-940-5222 / FAX 031-940-8659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5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일부개정(‘26.7.1.시행)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정보통신과’가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인 ‘AI정책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 인공지능 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

3. 주요내용

- 인공지능 위원회의 조 제목 변경(안 제7조)
- 인공지능 위원회의 위원 구성 변경(안 제8조)
- 실무협의회 위원장 직위 변경(안 제13조)
- 경진대회 및 포상에 대상에 “소속 직원” 명시(안 제17조)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6월 21일까지(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정보통신과(우 10932)

○ 연락처 : 031)940-4225 / 팩스 031)940-4149 / 이메일 yjo1019@korea.kr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5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2. 개정이유

- 파주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과 제명 및 조문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인원 및 분야 추가(안 제18조제1항, 제3항)
- 도서관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 변경 (안 제20조제2항)
-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규정 정리(안 제25조제2항)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6월 25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 · 주소 · 생년월일 · 연락처 · 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쇄재로33, 파주시 중앙도서관 2층 사무실(우 10917)
- 전화 : 031)940-5642 / Fax 031)940-5649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5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제명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명을 함께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파주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고 관련 조항 및 별지 등 개정(안 제2조,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6월 25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 · 주소 · 생년월일 · 연락처 · 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쇄재로33, 파주시 중앙도서관 2층 사무실(우 10917)

- 전화 : 031)940-5642 / Fax 031)940-5649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5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2. 개정이유

- 도서관 조직개편 후 분리되어 있던 정책추진 부서와 시행부서가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어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를 삭제하고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의 도서관운영위원회로 일원화하고자 하며, 일몰 사업에 대한 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몰사업 삭제(안 제2조제1호)
-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 수정 및 삭제(안 제3조제1항, 제9조 ~ 제15조)
- 상위법에 따른 용어 수정(안 제3조제2항제3호)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6월 25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 · 주소 · 생년월일 · 연락처 · 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쇄재로33, 파주시 중앙도서관 2층 사무실(우 10917)

○ 전화 : 031)940-5642 / Fax 031)940-5649

파주시 고시 제2026 - 22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5일

파 주 시 장

하천명	점용자	점용자 주소	목적·개요	점용위치	면적 (㎡)	점용기간
소리천	운정3동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350	꽃밭조성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038	1,798	'26.05.14.~ '26.10.31.
동문천	유*웅 외 4인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산북로 165	배수관 설치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321-6	2	'26.05.15.~ '30.12.31.
동문천	서*성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51	배수관 설치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310-1	2	'26.05.15.~ '30.12.31.
두포천	경기도 건설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우수관 설치	경기도 법원읍 금곡리 306번지 외 1필지	27.5	'26.05.19.~ '30.12.31.
소위지천	파주시 상수도과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상수도 인입	경기도 파주시 맥금동 1208-1	2.8	'26.05.21.~ 영구

소하천점용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점용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5일

파 주 시 장

하천명	점용자	점용자 주소	목적·개요	점용위치	면적 (㎡)	점용기간
지내울천	김*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원로 5	배수관 설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31-1	0.6	'26.05.11.~ 30.12.31.
지내울천	김*희	경기도 파주시 숲속노을로 153	배수관 설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31-1	0.6	'26.05.11.~ 30.12.31.

파주시 공고 제 2026 - 1676 호

부 의 안 건 공 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2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의안건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 6. 5.

파 주 시 장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1차)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 점용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6. 5.(금) ~ 6. 30.(화) (25일간)
3. 공고장소: 시보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5. 공시송달 대상
6. 고지사항
 - 가.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하여 주시고 그 결과(사진 등)을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할 예정이며,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7. 문 의 처: 경기도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 하천행정팀(☎ 031-940-5063)

2026년 6월 5일

파 주 시 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대상
----	-----------

연번	행위자	하천명	불법점용위치	위반내용
1	미상	문산천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460-2번지 일원	경작
2	미상	사포교천	경기도 파주시 맥금동 1140-2번지 일원	경작
3	미상	청룡두천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763-3번지 일원	경작
4	미상	금촌천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466-267번지 일원	경작
5	미상	공릉천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135-6번지 일원	경작

1.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460-2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경작)



2. 경기도 파주시 맥금동 1140-2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경작, 기타 적치물)



3.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763-3번지 일원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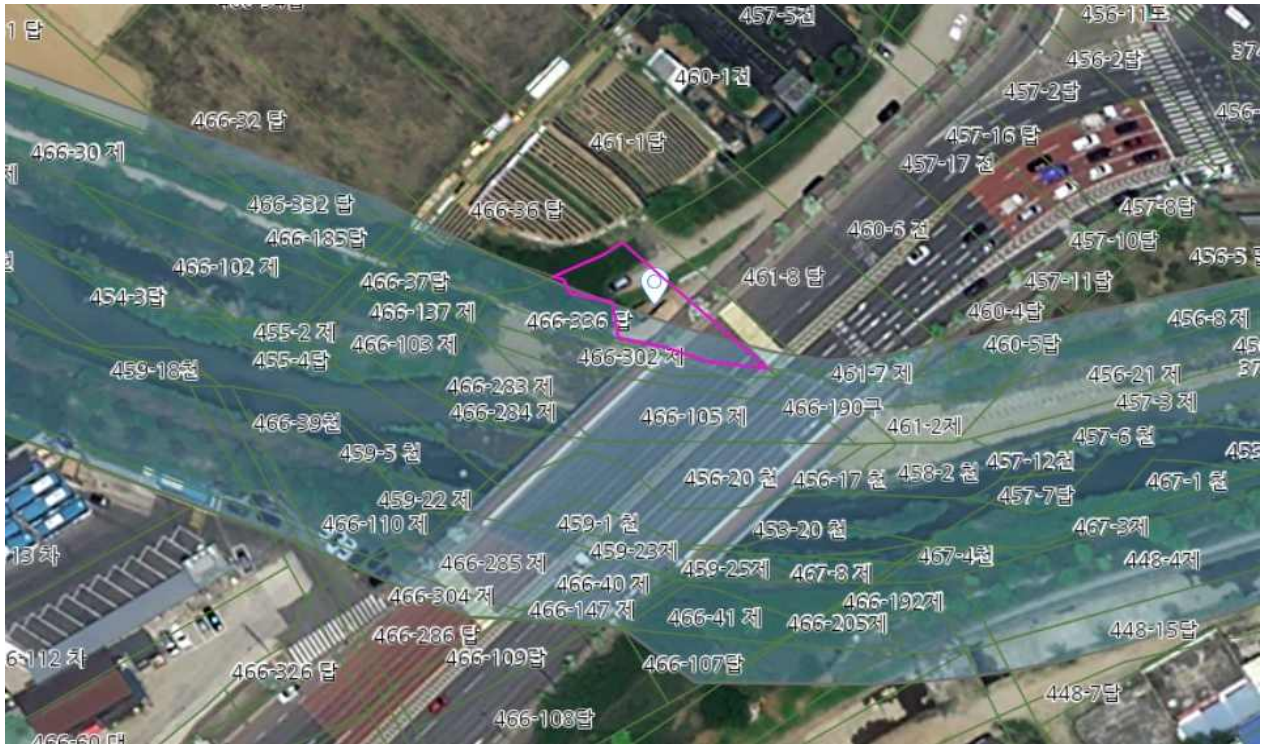


현장사진(경작)



4.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466-267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경작)



5.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135-6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경작)



제2026-02호

행정대집행 고 고 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6년 5월 15일, 파주시 공고 제2026-1487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경작 및 적치물을 2026년 6월 1일까지 원상회복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관리, 도시미관 등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6월 30일까지 반드시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고 고 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고 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수량	대집행 방법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460-2번지 일원	경작	1개소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강제철거
경기도 파주시 맥금동 1140-2번지 일원	경작	1개소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763-3번지 일원	경작	1개소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466-267번지 일원	경작	1개소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135-6번지 일원	경작	1개소	

2026년 6월 5일

파 주 시 장

대남 소음방송 피해 지원금 신청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6에 따라 파주시 내 대남 소음방송 피해 주민에게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 대남 소음방송 피해 지역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5일

파주시장

1. 신청 대상

2024년 7월 19일부터 2025년 6월 12일까지의 기간 중 파주시 내 대남 소음방송 피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어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처우법」 제2조에 따른 결혼이민자도 포함)

■ 대남 소음방송 피해 지역

- 탄현면: 대동리, 만우리, 오금1리, 오금2리, 문지리, 낙하리, 금산2리, 성동리 일부, 금승리 일부, 범흥2리 일부 (총 10개 리)

※ 성동리, 금승리, 범흥2리는 마을 내 일부지역만 해당되므로 신청 대상여부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장단면: 조산리(1개 리)

2. 신청 기간

2026. 6. 15.(월) 09:00 ~ 6. 30.(화) 18:00까지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구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소음 피해 신고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신청서 후면)
- 세대 대표자 선정서
- 통장 사본

※ 세부 사항은 붙임1의 필요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탄현면 주민: 탄현면행정복지센터 1층 농업인상담실
- 장단면 주민: 장단면행정복지센터

○ 우편 접수

- (10858)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 649번길 24-7
탄현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대남 소음방송 피해 접수 담당
- (10800)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길 220
장단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대남 소음방송 피해 접수 담당

※ 2026. 6. 30. 소인분까지 인정되며, 등기 발송 후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접수

- 탄현면행정복지센터: ruins@korea.kr
- 장단면행정복지센터: combicok@korea.kr

※ 메일 송수신 오류로 접수가 누락될 수 있으니, 메일 발송 후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탄현면행정복지센터 ☎ 031-940-8082
- 장단면행정복지센터 ☎ 031-940-8252
- 파주시청 안전총괄과 ☎ 031-940-4151

6. 대남소음방송 피해 신고 필요서류 등 신고서 서식(붙임1~붙임4)

붙임1

대남소음방송 피해 신고 필요서류(요약)

신고인	구비서류[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본인	신분증 사본, 피해신고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세대 대표자 (동일 세대)	세대 대표자 신분증 ※우편접수시에는 신분증 사본 세대원별 신분증 사본 세대 대표자 선정서 세대원별 피해신고서 각 1부(세대원 전원 작성) 세대원별 본인명의 통장사본 ※미성년자의 피해신고서, 등본 상 부모가 둘다 없으면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 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 신분증 필요
대리자 (동일 세대 외)	수임자 신분증 ※우편접수시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위임자별 피해신고서(위임자 전원 작성) 위임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외국인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자 또는 결혼 이민자)	피해신고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표에 기록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사망자 (상속인)	피해신고서 대표상속인 주민등록초본 및 통장사본 사망자 말소자초본(상세)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표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계좌 사용 불가능자	압류사실 기재된 잔액 증명서(금융기관 발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법원발급) 기타 이에 준하는 계좌 압류 확인 가능 서류

붙임2

소음 피해 신고서 서식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신설 2025. 5. 30.>

소음 피해 신고서

※ 제3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 동의 및 확인사항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한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유선전화	
주소	주민등록주소		
	실거주지 주소		
	※ 주민등록지와 불일치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피해 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확정			

3. 거주기간 정보

거주 제외 기간

① [] 현역병으로 군 복무
([]육군 []해군 []공군 []해병 []의무경찰 []의무소방 []대체복무)

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확정							

② [] 이민 등 국외체류

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확정							

$$\frac{1}{\sqrt{2}} \begin{bmatrix} 1 & 0 \\ 0 & 1 \end{bmatrix} \quad \frac{1}{\sqrt{2}} \begin{bmatrix} 1 & 0 \\ 0 & -1 \end{bmatrix} \quad \frac{1}{\sqrt{2}} \begin{bmatrix} 1 & i \\ 0 & 0 \end{bmatrix}$$

파주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피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1부 2.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이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병적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거주지 확인,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피해 지원금의 산정·결정 및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거주제외 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국·병무·교정 관계 기관에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확인사항

1.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 지원이 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본 신고서를 비롯하여 작성·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사람이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만큼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위의 1번부터 3번까지의 확인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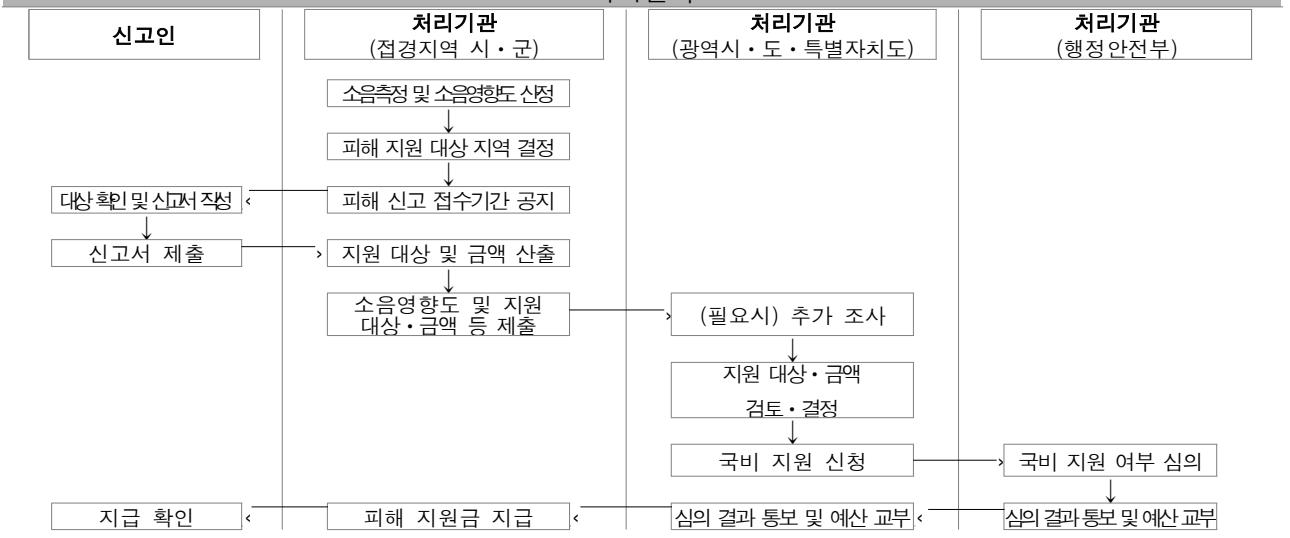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피해 지원금 지급 등의 지원을 위하여 활용되므로, '2.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3. '4. 거주기간 정보' 의 ①란에는 현역병으로 복무한 경우 구체적으로 육군·해군·공군, 해병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대체복무요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지원 대상기간 중 복무기간을 적습니다.
4. '4. 거주기간 정보' 의 ②란에는 이민, 여행 등 국외체류한 경우 지원 대상기간 중 국외체류기간을 모두 적습니다.
5. '4. 거주기간 정보' 의 ③란에는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지원 대상기간 중 수용기간을 적습니다.
6. '4. 거주기간 정보' 의 ④란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고 지원 대상기간 중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적습니다.
7.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한 피해 신고 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세대 대표자 선정서

세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화번호 :)		

본인들은 위 세대 대표자에게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4항,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제14조의제3항에 따른 본인들의 소음 피해 신고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1	대표자와의 관계	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2	대표자와의 관계	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3	대표자와의 관계	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4	대표자와의 관계	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5	대표자와의 관계	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6	대표자와의 관계	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첨부서류	위임자(위임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수수료 없 음
------	--	------------

세대 대표자 선정방법

1. 세대원 또는 세대원의 법정대리인 간에 합의하여 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2.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고, 위임자가 미성년자 등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4

소음피해 신고 위임장

소음피해 신고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화번호
	위임 사유 * 이민 등 국외체류[], 입원[], 교도소 등 수용[], 기타[]

본인은 아래의 수임인에게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4항,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제14조의제3항에 따른 본인들의 소음피해 신고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화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유의사항

1.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